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20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황 희·안규백·김병주

추미애 • 민병덕 • 정성호

한민수 · 김태년 · 이연희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나 국회의장 공관의 경비, 나아가 국회 외곽에 대한 안전이나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는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의 조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통제하여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

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경호경비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경호경비대(警護警備隊)를 둔다.

- 1. 의장 경호 및 의장 공관 경비
-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의원 경호
- 3.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
- ② 경호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경호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7급 이상의 경호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의 경호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신 설></u>	제144조의2(경호경비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경호경비대(警護警備隊)를 둔다. 1. 의장 경호 및 의장 공관 경비 의원 경호 및 의장 공관 경비 의원 경호 및 의장 의원 경호 기관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 ② 경호경비대 소속 공무원은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③ 경호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7급 이상의 경호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 급이하의 경호경비대 소속 공

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 의 직무를 수행한다.